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2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윤종오
정혜경 · 용혜인 · 김 윤
고민정 · 이기현 · 신장식
김재원 · 조계원 · 이재강
최혁진 · 이주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설치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별 개수 제한과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 내용에 관하여는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제8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따르며,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7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 7. (생략)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u>다음</u>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087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u>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에 따르며, 다음</u>-----.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